



Santa Ana시, Santa Ana 거리, 공공 안전, 필수 시 서비스 법안

포트를 수리; 거리, 인도, 공원, 및 놀이터의 안전 및 청결 유지; 낙서 및 쓰레기 제거; 화재 진압, 응급의료, 범죄 예방 및 911 응급 대응 제공과 같은 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판매세 1.5센트를 일몰 조항 없이 유지하고 유권자가 종료할 때까지 연간 약 \$84,000,000를 서비스에 제공하며, 독립 감사, 주민 감독, 및 모든 자금의 지역 통제를 동반하도록 Santa Ana시의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까?

찬반 투표의 의미

| 찬성(YES)                                                                                                                                              | 반대(NO)                                                                                                                                        |
|------------------------------------------------------------------------------------------------------------------------------------------------------|-----------------------------------------------------------------------------------------------------------------------------------------------|
| 이 법안에 대한 “찬성(YES)” 투표는 유권자들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 일반 시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세율 인하나 일몰 조항 없이 Santa Ana시의 지역 거래 및 이용세를 현재 세율인 일과 이분의 일 (1.5) 센트로 계속하는 것에 찬성하는 투표입니다. | 이 법안에 대한 “반대(NO)” 투표는 2029년 4월 1일에 예정된 일과 이분의 일(1.5) 센트에서 일(1) 센트로의 세율 인하를 삭제하는 것에 반대하고 2039년 4월 1일에 거래 및 이용세를 종료할 일몰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투표입니다. |

찬성과 반대

| 찬성                                                                                                                                                    | 반대                          |
|-------------------------------------------------------------------------------------------------------------------------------------------------------|-----------------------------|
| Thai V. Phan<br>Santa Ana 시의원<br><br>Michael Chu<br>Santa Ana 법안 X 위원회 위원<br><br>Paul McClaskey<br>SAPOA 집행위원회 위원<br><br>Adriana Alba<br>Santa Ana 주민 | 본 법안에 대한 반대 주장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 투표용지 법안-N

섹션  
11

법안 N 전문  
Santa Ana시

이미 주 조세청평위원회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이전에 채택된 거래 및 이용세와 관련하여  
SANTA ANA 지방법 제35장의 제7조의 일부를 개정하는  
SANTA ANA시 주민의 조례

Santa Ana시의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절.** 권한. Santa Ana시 주민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11조 제7절과 캘리포니아주 세입 및 과세 법전 제7285.9절에 의해 시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이전에 채택된 거래 및 이용세를 수정하는 Santa Ana 지방법 제35장의 제7조의 일부를 개정하는 본 조례를 이에 채택한다(밑줄 친 문구는 추가되고 취소선이 표시된 문구는 삭제된다.)

**제2절.** Santa Ana 지방법 제35장의 제7조의 제35-204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204절. - 거래 및 이용세의 부과—세율.

유형 동산을 소매로 판매하는 특권에 대해, 본 조의 시행일 이후 시의 편입된 구역에서 소매로 판매된 모든 유형 동산의 판매로 소매업자가 얻은 총수입에 일과 이분의 일(1.5) 센트의 세율로 모든 소매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며, 2029년 3월 31일까지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2039년 3월 31일까지는 일(1) 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절.** Santa Ana 지방법 제35장의 제7조의 제35-206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206절. - 이용세의 부과—이용세율.

본 조의 시행일 이후 소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유형 동산을 시 내에서 보관, 사용 또는 기타 방식으로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 대상 동산의 판매가격에 일과 이분의 일(1.5) 센트의 세율로 소비세를 부과하며, 2029년 3월 31일까지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2039년 3월 31일까지는 과세 대상 동산 판매가격에 일(1) 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배송 장소와 관계없이 배송료가 주 판매세 또는 이용세의 과세 대상인 경우 판매가격에 해당 배송료를 포함한다.

**제4절.** Santa Ana 지방법 제35장의 제7조의 제35-213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213절. - 유보됨. 종료.

본 제7조에 규정된 소매 거래 및 사용세 부과 권한은 2039년 3월 31일까지 계속된다.

**제5절.** Santa Ana 지방법 제35장의 제7조의 제35-217절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35-217절. - 유보됨. 일몰 조항.

2029년 3월 31일에 일과 이분의 일(1.5) 센트의 세율을 일(1) 센트로 인하하고 2039년 3월 31일까지 적용하여 총 아십(20) 년으로 한다.

**제6절.** 본 조례의 어떤 절, 문장, 조항 또는 문구가 어떠한 이유로든 관할 법원의 결정에 의해 무효 또는 위헌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결정은 본 조례의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anta Ana시의 주민들은 본 조례의 특정 부분이 무효이더라도 본 조례를 채택했을 것임을 이에 선언하며 무효인 부분은 분리되고 본 조례의 나머지 부분은 시행되기를 의도한다.

**제7절.**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9222절에 따라, 본 조례는 2026년 11월 3일 지방 총선거에서 투표하는 Santa Ana시의 유자격 유권자 과반수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제8절.** 본 조례는 시의회가 결의로 지방 총선거 결과를 인증한 날부터 십(10)일 후에 발효된다.

**제9절.** 시 서기가 Santa Ana 시민들이 본 조례를 승인하였음을 인증한 후, 시장은 본 조례에 서명하고 시 서기는 이를 해당 시의 조례 원본 대장에 기재하며; 그리고 이를, 또는 그 요약본을, 법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한다.



# 투표용지 법안-N

섹션  
11

## 공정 분석 Santa Ana시 법안 N

"Santa Ana 도로, 공공 안전, 필수 시 서비스 법안"이라는 제목의 법안 N은 Santa Ana 시의회의 표결로 투표용지에 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Santa Ana시 지방 조례 제35장 제 7조에 원래 포함된 일몰 조항과 2029년 인하를 모두 삭제하여, 기존 판매세를 2039년 이후에도 무기한 지속시키려는 것이다. 2018년, Santa Ana의 유권자들은 일반 시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9년 3월 31일까지 일과 이분의 일(1.5) 센트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후 2039년 3월 31일까지 일(1) 센트로 인하하는, 20년간의 지방 거래 및 이용세를 신설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면제되는 품목들을 제외하고, 이 거래 및 이용세는 대부분의 유형 상품의 매장 판매와 식당 구매에 적용된다.

법안 N은 2029년 4월 1일에 발생할 예정이었던 1.5센트에서 1센트로의 세율 인하를 삭제하고, 2039년 4월 1일에 지방 거래 및 이용세를 완전히 종료할 일몰 조항을 삭제하여 기존에 제정된 지방 거래 및 이용세를 개정한다. 법안이 승인되면, 지방 거래 및 이용세는 종료일 없이 1.5센트로 유지될 것이다.

유권자들의 50% 초과에 의해 승인될 경우, 법안 N은 지방 거래 및 이용세를 1.5센트의 세율로 계속 부과하여 일반 시 서비스를 위해 매년 약 \$84,000,000를 발생시킨다. 일반 시 서비스에는 9-1-1 응급 대응 서비스들 유지, 도로 파임들 보수, 그리고 낙서 및 쓰레기 제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거래 및 이용세의 지속적인 수입은 또한 시의회의 재량에 따라 시의 예상 구조적 적자를 해결하는 데에도 사용될 것이다.

법안 N은 시민 감독위원회, 독립 공인회계사에 의한 연례 감사, 또는 시가 거래 및 이용세 수입에서 지출한 내역의 연례 공개에 관한 기존 요건을 개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건들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법안 N이 법률로 되기 위해서는 2026년 11월 3일 선거에서 투표하는 Santa Ana 유권자들의 과반수가 법안에 찬성하는 투표를 해야 한다.

요약하면:

이 법안에 대한 "찬성(YES)" 투표는 유권자들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 일반 시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세율 인하나 일몰 조항 없이 Santa Ana시의 지역 거래 및 이용세를 현재 세율인 일과 이분의 일(1.5) 센트로 계속하는 것에 찬성하는 투표이다.

이 법안에 대한 "반대(NO)" 투표는 2029년 4월 1일에 예정된 일과 이분의 일(1.5) 센트에서 일(1) 센트로의 세율 인하를 삭제하는 것에 반대하고 2039년 4월 1일에 거래 및 이용세를 종료할 일몰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투표이다.

위의 성명서는 법안 N에 대한 공정한 분석입니다. 이 법안의 사본을 원하시면, 시 서기관에게 (714) 647-6250으로 전화하시면 사본을 무료로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Santa Ana 시 법무관

# 투표용지 법안-N

## 법안 N에 대한 찬성론

Santa Ana 가정들은 안전한 공원과 놀이터, 양질의 도로와 기반 시설, 깨끗한 커뮤니티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찰관과 소방관으로부터의 신속한 응급 대응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우리 아이들과 시니어들이 양질의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우리의 근로 가정들의 세금 인상 **없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Santa Ana의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우리의 도로, 공공 안전, 그리고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이 법안에 **찬성(YES) 투표**할 것을 권하는 이유입니다.

이 투표용지 법안이 통과되면:

1. 시가 454마일의 도로, 90마일의 빗물 배수로, 및 371에이커의 공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이 투표 법안으로 조성되는 모든 수입이 이곳 Santa Ana에 남습니다. 카운티, 주, 및 연방 정부는 이를 우리로부터 가져갈 수 없습니다.
3. 911 신고에 대응할 충분한 경찰관들, 소방관들, 및 구급대원들을 갖추도록 보장합니다.
4. 세금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2018년에 유권자들이 승인한 세율을 유지할 뿐입니다.
5.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러한 지방 세금의 사용을 감독하도록 요구합니다.

Westminster, Buena Park, Garden Grove, La Habra, Placentia, Seal Beach, 그리고 Los Alamitos를 포함한 오렌지 카운티의 여러 다른 도시들도 일몰 조항이 없는, 유사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투표용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최초 응급요원을 갖추지 못할 수 있으며, 우리는 도로와 공원 유지에 관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며, 우리의 근로 가정들, 시니어들, 그리고 아이들은 Santa Ana 주민들이 누려야 할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찬성(YES) 투표**는 우리의 도로들, 공원들, 공공 안전 인력 수준, 그리고 필수 서비스들을 보호합니다.

**찬성(YES) 투표**는 Santa Ana의 미래를 보호할 것입니다.

서명자/ Thai V. Phan  
Santa Ana 시의원

서명자/ Michael Chu  
Santa Ana 법안 X 위원회 위원

서명자/ Paul McClaskey  
SAPOA 집행위원회 위원

서명자/ Adriana Alba  
Santa Ana 주민

본 법안에 대한 반대 주장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